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9 선고 2021가합519514 판결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

피 고 1. 주식회사 A(법인등록번호 : B)
2. C
3. 주식회사 D(법인등록번호 : E)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7. 9.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법인등록번호 : B), C는 연대하여 312,825,861원 및 그중 310,522,461원에 대하여 2020. 10. 14.부터 2021. 5. 11.까지는 연 8%의, 2021.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D(법인등록번호 : E)은 피고 주식회사 A(법인등록번호 : B)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312,825,861원 및 그중 310,522,461원에 대하여 2020. 10. 14.부터 2021. 4. 16.까지는 연 8%의, 2021.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예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A(법인등록번호 : B)과 피고 주식회사 D(법인등록번호 : E) 사이에 별지 특허권의 표시 기재 각 특허권에 관하여 2020. 7. 17. 체결된 일부이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D(법인등록번호 : E)은 피고 주식회사 A(법인등록번호 : B)에게 위 각 특허권에 관하여 2020. 8. 7. 마친 권리의 일부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는 이유

가. 관련 법리

청구의 예비적 병합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수 개의 청구에 관하여 주위적 청구의 인용을 해제조건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형태의 병합이라 할 것이지만,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수 개의 청구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를 할 합리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붙인 순위에 따라서 당사자가 먼저 구하는 청구를 심리하여 이유가 없으면, 다음 청구를 심리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17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D(법인등록번호 : E)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에 따른 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손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양립 가능한 청구로서 본래적 의미의 주위적, 예비적 병합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수개의 청구를 심판의 순위를 붙여 구하는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에 해당한다.

2) 그러나 한편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D(법인등록번호 : E)이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으로서 매월 일정 금액을 분할상환하는 방법으로 피고 주식회사 A(법인등록번호 : B)의 구상금채무를 변제할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은 채무 변제 가능성을 고려하여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하였고, 그와 같이 청구한 것에 합리적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3)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D(법인등록번호 : E)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김양호, 판사 백두선, 판사 김민지

별지